[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2024년 4월 18일자 '청약Home'에 게재된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구 분	기존 [2024.04.18.]	변경 [2024.04.22.]
[1P] ※ 단지 주요정보	거주의무기간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적용	거주의무기간 : 실입주일로부터 5년 적용

단지 주요정보 Ж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경기도 과천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0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 입주자 선정일로부	터 3년	실입주일로부터 5년 적용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4.18.(목)	2024.04.23.(화)	2024.04.24.(수)	2024.05.02.(목)	2024.05.08.(수) ~ 2024.05.10.(금)	2024.05.13.(월)

공통 유의사항

- 청약 시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에 따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을 모두 수락 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했던 분양자가 거주 후 퇴거하였으며, 일부 사용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준공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이며 계약 체결 후 정해진 입주기간에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입주시까지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u>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 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금회 계약취소된 주택을 재공급 하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과천 르센토 데시앙의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하며, 청약당첨 후 부적격 처리, 재당첨 제한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 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청약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본 공고의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입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П

단지 유의사항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18.(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21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0.22.(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0001181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4.23.(화) 2024.04.24.(수)		2024.05.02.(목)	2024.05.08.(수) ~ 2024.05.10.(금)	2024.05.13.(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 ■ 현장접수 불가	7:30)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륭테크노타운15차 1107호 ㈜	· 시민대로 401, 대우건설 수도권남부마케팅센터)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주택법 제57조의2 의거하여 계약자의 경우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실입주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의무화 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교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 **도시정비과 10334호(2024. 4. 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4BL (과천대로8길 15,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5층 7개동 총 679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2세대 [특별공급 1세대 및 일반공급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5월 13일 ~ 2024년 7월 15일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 가능 / 최초 입주시기 2021년 12월)
- 공급대상

주택	7 CH 21 21 W 4	구택형 모델 (전용면적기준	주택형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구분 주택관리번	주택관리번호		(전용면적기준)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신혼부부	계	세대수
па	510	01	084.7450D	84D	84.7450	25.5789	110.3239	53.6674	163.9913	55.1901	1	1	1	-
민영 주택	2024930021	02	084.6197E	84E	84.6197	26.5185	111.1382	53.5881	164.7263	55.1085	1	-	-	1
			합 계						2	-	1	1		

■ 공급금액표

조미취	타입 (약식표기)	동-호수		총 공급금액							
주택형 (전용면적)				아파트 분양가			계(C)	계약금(20%)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소계(A)	· 추가 부대경비(B)	(C=A+B)	계약시	입주지정일		
084.7450D	84D	407-1603	489,842,232	302,557,768	792,400,000	14,720,000	807,120,000	161,420,000	645,700,000		
084.6197E	84E	406-0501	489,117,988	283,482,012	772,600,000	14,140,000	786,740,000	157,340,000	629,400,000		

- ┃※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은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이자, 관리비,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설치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무상옵션, 유상옵션은 기존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며,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승계 거부 시 계약 불가)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추가 부대경비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금액]

- ※ 발코니 확장 및 별도품목(유상), 유상옵션(가전)은 아파트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무상옵션을 포함하여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① 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 (단위: 원)

타입 동-호수 발코니확장	수납 프리미엄	침실수납 프리미엄	현관중문/	거실주방 바닥	주방벽 마감	합 계	비고		
	글포키득 8	18 -996		스마트욕실 중문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 / II	기고	
84D	407-1603	5,660,000	3,140,000	3,550,000	-	-	-	12,350,000	_
84E	406-0501	8,690,000	-	-	-	-	-	8,690,000	

② 가전옵션 (단위: 원)

타입 동-호수 -	도 승스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합계	비고
	일반형 4대	공기청정형 4대	인덕션2구+가스1구	일반오븐	스팀오븐	1 1 M	미끄	
84D	407-1603	6,300,000	-	-	-	-	6,300,000	
84E	406-0501	-	-	-	-	-	-	

③ 납부금액 (단위: 원)

타입	동-호수	발코니확장 및 평면옵션 가전옵션		합 계	계약금(정액제)	잔금	비고
9 8	니다 등-오구	1	2	3=(1+2)	계약시	입주지정일	미포
84D	407-1603	12,350,000	6,300,000	18,650,000	1,500,000	17,150,000	
84E	406-0501	8,690,000	-	8,690,000	1,500,000	7,190,000	

■ 공통 유의사항

- ※ 본 아파트는 2021년 12월 입주하였으며, **금회 재공급 세대 잔금납부일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2024년 7월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 청약 전 현장방문 등으로 주변여건을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여,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계약 전 세대 내부 관람은 불가합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청약자 자격검증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IV 특별공급

구분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당첨자 '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SEVIE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저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과천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١	대상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١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	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4.1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	: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비율			소득	금액				
	⊤ 世	미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운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	원수별 가구당 월평	명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	성원 전원으로 산정	d. 단, 임신 중인 태	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	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	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	자 또는 그 배우지	h와 같은 세대별 -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비고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							, , , , ,		
		•	-	근무월수)으로 나누	어 산정하고, 사입	は자인 경우에는 전	년도 소득금액증당	∄ 원본상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									

"수택성악 FAQ(국토교통무 말간)"들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명 사료가 세술되지 않으면 무석격 저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건축물	시가표준		는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주택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3억3,100만원 이하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토지	단, 아래 * 「농지법 * 「농지법 * 「초지법 하가증의 * 공부상 * 종중소의 제한을	경우는 제외 기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 리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 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용되고 있는 경우 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과천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٧

VI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5.02.(목) ~ 2024.05.11(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시비드	문자	- 제공일시 : 2024.05.0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제출	유형		발급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 분양사무소(아래 계약장소) 비치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대리 계약 불가
	0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공통서류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0 111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0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	본인 및 만19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0		확인서	이상 세대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 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 보험증 제출 가능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소 7 0 0 N m	이상 세대원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표 소득증빙서류] 참조
		0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U		(또는 배우자)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본인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0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 본인	- 법정의 성구
특별공급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은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분양사무실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 _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리인	0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청약자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당첨자격확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제출시	0		위임장	청약자	- 분양사무실에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세물시	0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몇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사전 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근 로 자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또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 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 영 업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자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 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 /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 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 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 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2023.01.01.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없음(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또는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견본주택 ② 홈택스		

- ※ 상기소득 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계약시 구비 서류

구분	제출 필수	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계약금 입금증	본인	- 분양사무실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계약 시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용에 한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대리인 계약 불가)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0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0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0	추가 개별통지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계약 시	0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위임용" 본인발급용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본인 외 제3자)	0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일정 및 계약장소

VIII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신혼부부)	• 일시: 2024. 05. 02.(목) • 확인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 일시: 2024. 05. 13.(월) • 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일반공급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성소: 성기도 현정시 중인구 시한대도 401, 대륭테크노타운15차 1107호 ㈜대우건설 수도권남부마케팅센터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아파트 계좌와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좌가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아파트(계약금, 잔금)	우리은행	1005-704-058158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계약금,잔금)	우리은행	1005-004-056410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대금별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분양사무소에서는 현금수납이 불가하며(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407동1603호 홍길동 → 4071603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대금은 지정된 각각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납부기일 내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 분양대금 대출 알선은 없으며, 모든 분양대금은 자납하여야 합니다.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 공급방법

-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미계약분이나 부적격자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만 유선 및 문자로 통보예정입니다.
- 예비당첨자 서류검수를 통보 받은 경우 예비 당첨자 검수일(별도 통보)에 서류 제출하여 검수 받아야 하며 서류 검수를 받지 않는 경우 예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500% 선발하므로 서류검수 요청은 미달된 주택형의 예비당첨자 선순위 일부에게 통보하며, 선순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서류검수 및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자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등기원인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인지 구입 후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주택의 범위 건물유기사항증면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동재된 전국 소제 주택(공유지본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함), 분양권동 1. 건물, 동기사항증면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건화등반 처리일 2.의. 분양권동에 전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채결일 2.의. 개조제가로다음에 따른 분양권동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동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급 안남일 나. 분양권동을 중에나 그 밖의 사용로 처분한 경우 사업론체외의 계약서성 병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이부를 증명한 수 있는 서류・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간에 인정하는 날 제고호 제고호의 일자가 성이될 경우에는 먼저 차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산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문을 취득한 사실에 관명되어 사업주제외의 계약서성 병의변경일 2. 도시지역에 아난 지역 또는 단의 형정기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간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실지역에 거주(성소으로 주택의 기급 경우에는 비장수학이 기주한 것을 성속인이 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증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수택 다. 소유지의 「기독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존에 건독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증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수택 다. 소유지의 「기독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존에 건독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수택 다. 소유지의 「기독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존에 건독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수택 다. 소유지의 「기독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존에 건독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증 보는 배우자로부터 상숙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수택 다. 소유지의 「기독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설치 등록이 제간되어 되었는 경우 (소유지의 단)목관계에 공급될 목적으로 사업계획 수업을 받는 경우되어 되었는 기육 보안 보안되었다며 수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제가 정부시책의 일확으로 근로관에게 공급될 목적으로 사업계획 수업 보안 환경을 1을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원로 실하다 소유하고 있는 기존에 보안 기존에 되었다면 구독에 가진 기존에 보안 기존에 가를 기존에 건물을 2하여 보안 기존에 보안 기존에 가를 기존에 건물을 2하여 함께 가를 기존에 가를 가를 건강하여 가를 기존 경우에 가를 가를 건강하여 기존에 가를 기존 경우에 가를 가를 건강하여 가를 가를 건강하여 건물을 일하다면 가를 기존하여 가를 가를 건강하여 기존에 가를 가를 건강하여 가를 기존하여 건물을 일하다면 가를 기존하여 기존에 가를 가를 건강하여 가를 가를 건강하여 가를 기존하여 건물을 일하다면 가를 기존하여 기존에 가를 가를 건강하여 보안 기존에 되는 수록을 일하다면 보안되었다면 수록되었다면 보안되었다면 기존에 가를 가를 건강하여 가를 가를 건강하여 보안 기존에 되는 구택 기관에 가를 가를 건강하여 보안 가를 기존하여 있는 경우에 되는 구택으로에 관한 규칙, 발표 1제 1호가목기를 준용한 1년 시작 제공하고 있는 경우 1인 유무지원보이 1명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취수 역반 사용이 제존 작업이 관한 구목 및 의료 제공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전 가는 건목 대생에 취존 구목에 함께 가는 경우 보안 기존에 관한 경우 기반 보안 기존에 가를 기존하는 경우 1인 유무지원보이 1명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취수 약반 경우 기관에 가를 기존 경우에 가는 구목을 입어하여 우주하고 있는 일차수택을 취득한 경우보서 다음 각목의 요구를 존속하는 경우 1인 유무지원보이 보안 기관을 기관하는 경우 1인 유무지원보이 1명의 경우 전략 기관에 보안 경우 1일부터 기관을 기관을 제공호 기관을 기관을 기관을 기관하여 있다면 구목 기관을 기관을 기관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1. 건물 등기사망증명사.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의 제임 기약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제점일 2.23. 생광권당에 관한 계약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급 환납일 2.23. 제2조제/도라면에 따른 분당병등의 매매계약사 기. 문항품등을 중에나 그 밖의 사용로 처분한 경우 시업문제원의 계약시상 병의반경일 3. 그밖에 주목산유여부를 공행할 수 있는 시휴: 시청 또는 근수 등 공공기간인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인저 지리된 날을 기준으로 할 1. 상속으로 주락을 취득한 사업이 박망되어 보접주관부터 제32조제3함에 따라 부작적자로 통보받은 남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이나 지역 또는 면의 행공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가주(성속으로 주락을 취득한 것임이 박명된 이 사용적인이 가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라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기. 사용증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전목주락 나. 85제곱이다 이하의 만독주택 나. 85제곱이다 이하의 만독주택 나. 85제곱이다 이하의 만독주택 시. 제우자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신의 전원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자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지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신구목사업자가 분항을 목적으로 구액을 건설하여 이를 본 한 환환하게 생물 제공조제3명에 따라 부적자로 통보받은 발탁이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시유자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신점하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조조제3명에 따라 부적자로 통보받은 발탁이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시유자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신점하다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에이 법 제조조제3명에 따라 부적자로 통보받으로 발탁이 3개월 이나에 이를 처분한 경우 지수에 이상의 직원조속(메무자의 직원조속으로 무대를 건설하여 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조조제3명에 따라 부적자로 통보받으로 발탁 가격 일본으로 간단하지 수에 지원 기관 사용자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있는 경우에 가격수 병안 여부 모인 시 작계존하고 비용자 중 한 민이라도 주락 보통 보안되는 경우에 가격수 등을 전용하는 경우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가격수 병영 여부 모인 시 작계존하고 비용자 중 한 민이라도 주락 보통 보안되는 공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민이라도 주락 보보는 1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작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민이라도 주락 보보는 1세만 대한 생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작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민이라도 주락 보보는 1세만 생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가격하는 경우 지수되었다면서 보안되었다면서 보안되었다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만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조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조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증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기 있는 경우 6. 반6에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는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병이라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병이라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무로 당보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사원들이 있는 경우대는 작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사원되었고 있는 경우에는 작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보양가족에서 제외함 사원되었고 있는 경우이는 작용되었거나 주택이 있는 경우대는 작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보양가족에서 제외함 사원되었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이는 작용되었거나 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를 열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경인한 경우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 근축합 대변 오류 경우에 이를 보실시키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경인한 경우 말한다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원에 따른 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숙한 세대가 소형자가주택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형 및 제28조제10형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의현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을 경우 보급으로 보급으로 보급으로 보급으로 함께 보고 제공조제10형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원이 입자주택을 경우 또 사원이 입자주택을 경우 또 하나면 해당하는 경우 다면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면 해당하는 경우는 제의현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의 전보 기존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취득(생편 기존 수단원 기존 전략 기존 보다는 경우 지급으로 기존 모든 기관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취득 취득(제 최조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다면 경우 이하인 경우 다면 경우 작품 취득을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는 취득을 취득성 경우 이라면 기존	주택처분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구백소휴어는 확인방법 및 판성기군('구백공급에 판인 규식」제23소제4인 및 제53소)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게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실지 아니하는 페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이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충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용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작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일차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12. 우주택사례이 1억당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刊장된인임수보원은 전체 12월 조과하는 경우의 한작자를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2. 무주택시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2. 무주택시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주택법 사행령) 제2조의 각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같다)을 취득성에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12. 보다된 제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사행령) 제2조의 각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 같다)을 취득성이 최착이 보다된 2024년 12월 12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사행령) 제2조의 각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성이 취득성이 보다면 기상으로 기상으로 기상으로 기상으로 기상으로 기상으로 기상으로 기상으로		

X

기타

■ 시행사 및 시공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호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태영건설	금호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20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법인등록번호	110111-2137895	110111-0155451	110111-0134877	110111-2137895

^{※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됩니다.(상호: 대우건설 컨소시엄, 성명: ㈜대우건설외 2명, 사업자등록번호: 613-67-00129)

■ 계약장소 및 문의

계약장소	문의전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070-4206-1276
대륭테크노타운15차 1107호 ㈜대우건설 수도권남부마케팅센터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주중 10:00 ~ 11:30 / 13:00 ~ 17:0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이외의 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